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서면답변결과

■ 환경보호과 서면답변

제2지방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사항

□ 불법 폐기물 개요

- 발견일시 : 2007. 11 09
- 위 치 : 동두천동 339-1번지 일원 8필지
- 폐기물내역 : 매립폐기물 (약18,200톤), 준설 토사(약50,000톤)

□ 그간 진행 사항

- '07.11.09 동두천동 339-번지의 다수필지에 불법 폐기물 신고 접수(양주경찰서) 되어 수사 착수
- '07.11.14 불법폐기물 매립 지역 굴착작업 및 시료 채취 검사 의뢰
 - ⇒ 성분검사결과 무기성 오니로 판정됨
- '07.11.12~'09년1월 현재 까지 관련 공무원,경기지방공사, 불법 폐기물 원인 추정자 수사 진행중 임
 - ⇒ 불법 폐기물 행위자는 당시 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던 호용국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관련 없는 것으로 추정됨

〈수사 종결 후 행정 진행 예정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의해 불법 폐기물 원인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명령 예정임

□ **폐기물 처리 상황**

- 경기지방공사가 원인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 폐기물은 처리 완료
- ⇒ 처리비용은 수사 종결 후 경기지방공사가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 계획임

**대기환경 관리지역
지정고시 경위 및 주민부담 사례**

□ **대기환경 관리지역 지정고시 경위**

- 서울, 경기지역의 심화되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2003.12.31일자로 제정
 - 특별법은 2005.1.1일자로 시행하였으며 제2조 제2호 따른 대기관리권역은 시행령 (별표1)로 지정함
 - 대기관리권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4개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2. "대기관리권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수도권지역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나. 수도권지역중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 2006.1.1일자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기도 등대기관리권역 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매연검사) 실시함

- 매연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또는 조기폐차 의무화가 시행

<특별법 주요내용(특정경유자동차 관련)>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제25조제1항)
- 매연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의무 부여**(제25조제4항)
-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저감장치 부착시 경비지원(제25조제6항)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44조 제2호)
-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권고(제27조 제1항)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6조제1항2호)

○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로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등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

- 지원대상 :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차량
 - 특정경유차 : 3.5톤미만차량 : 5년경과 / 3.5톤이상차량 : 2년경과 차량
- 지원 근거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제27조
 -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
 - 제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제5조(비용지원)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지원금액 : 장치별 지원액 차등 지급(69만원 ~ 764만원)

※ 저감장치별 지원내역

(단위 : 만원)

구 분	제1종				제2종 (p-DPF)	제3종 (DOC)		저공해엔진(1톤)		저공 해엔 진 (2.5톤)
	복합 DPF		자연 DPF							
장치 형태	중형	대형	중형	대형	인 증 받 은 모 든 장 치	인 증 받 은 모 든 D O C		R V, 소 형 승 합	중 소 형 화 물 (총 중 량 3.5 톤 미 만)	
적용차종	인 증 내 역 에 따 름 (버 스, 대 형 화 물 등)				인 증 내 역 에 따 름	중 소 형 화 물 (총 중 량 3.5 톤 미 만)	R V, 소 형 승 합	인 증 내 역 에 따 름 (중 소 형 화 물 및 R V, 소 형 승 합 등)		
지원금액	728 (698)	764 (734)	568 (538)	608 (578)	300 (296)	89	69	370	391	401
유지관리 비용	44 (31)	44 (31)	44 (31)	44 (31)	5 (1)	1	1	1	1	1
자부담금	40~60만원				15~25만원	10~20만원		10~40만원		
조기폐차 시 상 한 금 액 (저 감 장 치 미 부 착 차 량 만 지 원)	6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단, 3000cc 이상은 300만원이하)		

□ 주민부담 사례

○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또는

개조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저감장치 부착 시차량 소유자가 일정 금액(10~60만원)의 자부담을 지불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장치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금액임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과태료 부과금액

· 검사지연일수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지연일수 30일 초과 : 매1일 지연 시 1만원씩 추가(최대 60만원)

관용차량 화물차 운영비 사용내역

□ 2007년도 운영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공공요금	수리보수비	유류비	비 고
재활용센터	21,519,800	2,034,260	7,778,920	11,706,620	대
청소차량	36,706,720	4,231,280	6,363,500	26,111,940	대
생활쓰레기적환장	20,736,650	2,088,740	1,897,500	16,750,410	대

□ 2008년도 운영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공공요금	수리보수비	유류비	비 고
재활용센터	32,036,740	4,422,310	4,479,500	23,134,930	대
청소차량	50,578,520	4,931,090	6,404,710	39,242,720	대
생활쓰레기적환장	18,494,390	1,510,840	4,325,090	12,658,460	대

■ 교통행정과 서면답변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실적

연 도	과목명	납부자	부과일자	부과금액	위반내역	비 고
2008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위반 과태료	이복동 (효성운수:택시)	08.7.17	100,000	복장위반	
	“	이용식 (효성운수:택시)	08.7.17	200,000	부당요금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과징금	효성운수(주)	08.1.18	1,800,000	차령초과	
	“	효성운수(주)	08.1.23	1,800,000	차령초과	
	“	효성운수(주)	08.1.23	1,800,000	차령초과	

■ 도시과 서면답변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사항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세출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도시계획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함
-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함
-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총당하며, 세입총액을 초과하는 집행잔액은 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비 또는 관리비에 총당하여야 함

□ 일반현황

- 사업명 :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위치 : 동두천시 생연동 746번지 일원
- 용도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 시행면적 : 182,230㎡
- 사업기간 : 2006. 03. 31 ~ 2009. 03. 31
- 사업시행인가일 기준 : 2006. 03.
- 사업비 : 16,900,000천원

□ 사업지구 현황

- 용도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 필지수 및 면적 : **227필지 182,230㎡ 【100%】**
 - 일반환지 : 183필지 (89,675.9㎡) 【49.21%】
 - 체비지 : 38필지(23,652.7㎡) 【12.98%】
 - 일반체비지 : 32필지 (16,473.7㎡)
 - ☞ [16,473.7 - 1,744=14,729.7㎡]
 - 주차장(6개소) : 7,179㎡
 - 공공공지 : 2,433㎡ 【1.33%】

- 공공용지 : 66,468.4㎡ 【36.48%】
 - 지구도로 : 43,751.4㎡ (연장3,238M)
 - 완충녹지 : 16,283㎡
 - 어린이공원(4개소) : 6,221㎡
 - 교통광장 : 213㎡

※ 평균감보율 : 48.12%

□ 그동안 추진사항

- 1998. 10. 24 :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고시(경기도)
- 2001. 10. 25 : 실시설계 및 환지용역
- 2004. 11. 04 : 시의회 의견청취
- 2004. 11. 09 : 주민설명회 개최
- 2005. 11. 03 : 동두천시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 2006. 03. 31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 2007. 08. 20 : 착공
- 2008. 08. 11 : 환지처분 및 축락등기 용역착수

□ 사업계획

사업비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당 초	변 경	
합 계	16,900,000	24,000,000	증)8,100,000
공사비	9,808,467	9,363,190	토목,전기,조경
사무비	1,554,000	5,216,810	용역,전입금,부대비,환지청산금
보상비	1,755,000	1,800,000	면적 차이에 따른 소송건 포함
부담금	3,782,533	7,620,000	

□ 체비지 매각금의 검토

○ 사업인가와 체비지 매각시점 비교('08. 11.17)

구 분	사 업 비(천원)					비 고	
	당 초	변 경					
		계	매각액	미매각액	부족사업비		
합 계	16,900,000	24,000,000	9,014,365	14,825,945	159,690		
체비지 매각금	일 반 체비지	15,597,400	20,496,230	9,014,365	11,481,865		
	주차장	1,302,600	3,344,080	0	3,344,080		매각 대상

□ 부족사업비

○ 당초 총사업비 16,900,000천원 계획하였으나

- 사무비 및 보상비

· 공부상 면적과 실측면적 차이등 : 약1,000,000천원(2,509㎡/실측면적 438㎡)

· 감보율 재산정 : 약150,000천원

· 환지청산금 및 지구외 토지보상비 : 2,124,610천원

- 부담금 증가 :약 7,600,000천원

○ 변경 사업비 : 체비지 매각금(매각액+미매각액)+전입금 총당으로 당초대비
159,690천원 부족

구 분	세부내역	당초(천원)	변경(천원)	비 고
사무비	전입금	-	800,000	
	환지청산금	-	3,274,610	보류지 예정가격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1,034,850	6,500,000	7,620,000
	하수도 부담금	2,500,000	320,000	
	상수도 부담금	-	800,000	
합 계		3,534,850	11,694,610	증)8,159,760

□ 대책

○ 체비지 미매각액 150억원 일시차입

- 부족사업비 1.6억원 일반회계 전입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 2항 -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 농지전용 부담금 최종 사업 완료시 납부(협의).

□ 향후계획

- 2009. 03. 04 : 전기공사 준공예정
- 2009. 02. 05 : 토목공사 준공예정(동절기 공사중지로 5월경 준공예정)
- 2009. 05. : 환지처분
- 2009. 03. : 조경공사 착공 예정

□ 참고사항

- 실시설계 및 환지예정지 용역
 - 사업기간 : 2006.11.07 ~ 2007.11.16
 - 용역비 : 512,200천원
- 토목공사
 - 사업기간 : 2007.08.20 ~ 2009.02.05 (2007.08.14:계약)
 - 공사비 : 4,452,299(도급: 2,986,940, 관급 : 1,465,359)천원
- 폐기물 처리용역
 - 사업기간 : 2007.08.17 ~ 2009.02.01 (2007.08.17:계약)
 - 용역비 : 203,591천원

○ 전기공사

- 사업기간 : 2008.08.06 ~ 2009.03.04 (2008.08.04:계약)

- 공 사 비 : 913,750(도급: 366,030, 관급 : 547,720)천원

○ 환지처분용역

- 사업기간 : 2008.08.11 ~ 2009.06.30 (2008.08.06:계약)

- 용 역 비 : 184,635천원

○ 환지확정측량 예정

- 사업기간 : 2008.12. ~ 2009.05.

- 추정측량비 : 185,807천원

■ 특별대책지역과 서면답변

**『동두천지원특별법』 입법
추진에 따른 전략적 추진 계획서**

입법 발의된 「동두천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단계적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함

□ 추진경위

○ 한나라당 당정협의회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건의
(‘08.6.13)

- 한나라당 국회의원·전국 16개 시·도지사간 당정협의회시

○ 김성수 국회의원 주관 전문가 토론회 개최(‘08.7.4)

- 제2청, 동두천시, 경기개발연구원, 대학교수 등

○ 특별법 제정 T/F팀 구성(‘08.7.16)

- 김성수 국회의원실, 경기도 제2청, 동두천시, 경기개발연구원

○ 특별법 제정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08.7.21~7.31)

- 목표 41,640명, 실적 50,227명(120.6%)

○ 국회 토론회 개최(‘08.10.28)

-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20여명), 동두천시민 등 700여명

○ 특별법 입법 발의(‘08.12.4)

- 김성수 국회의원 등 208명

□ 향후일정(추진기간은 예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 관련 상임위원회 및 정부 의견 수렴('08.12월)

※ 관련부처 방문·설명

- 행안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09.2월)

- 국회 공청회('09.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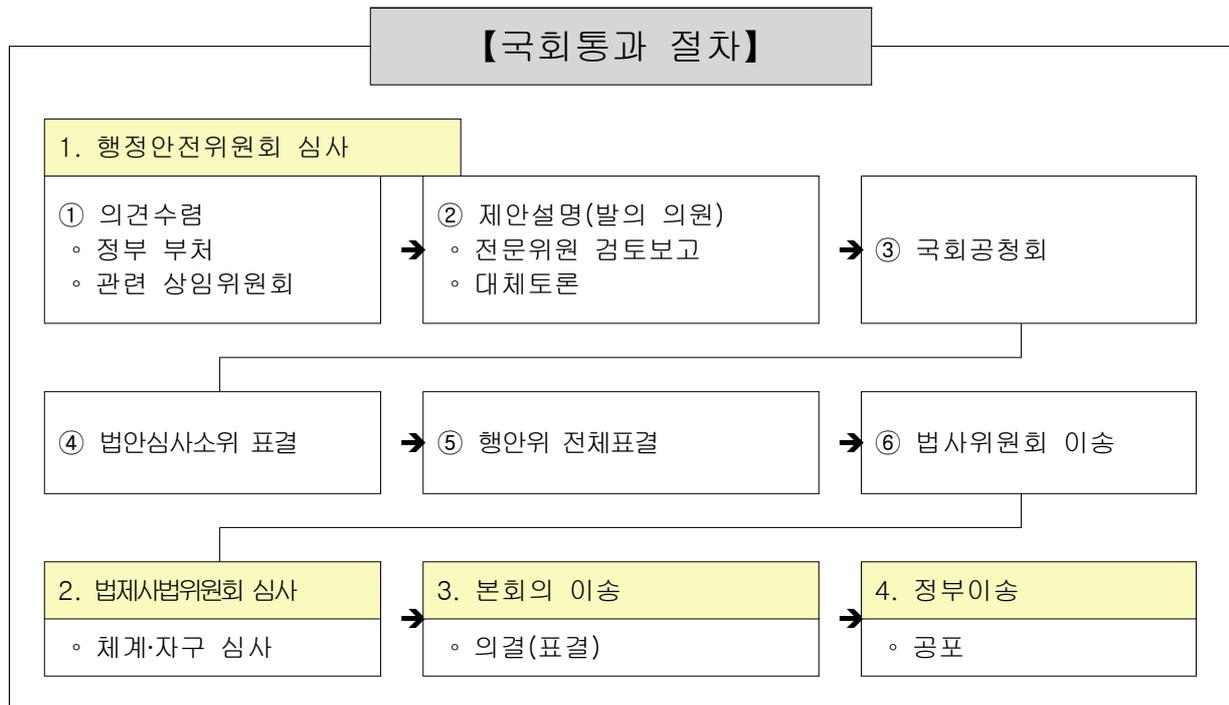
-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표결('09.4월)

- 행안위 전체회의 표결('09.5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09.6월)

○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09.7월)

□ 단계별 추진대책



1

반대가 예상되는 정부 부처 대응 대책

- 추진시기 : '08. 12월(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의 의견조회시)
- 특별법에 대한 의견조회시 반대가 예상되는 부처 방문·설득

◆ 부처별 반대예상 사유

부처별	반대 예상 사유	비 고
기획재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시지원 특별회계 설치 ◦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 ◦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안 제5조 안 제25조 안 제16조, 제32 조 안 제19조
국 방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공여지 매각대금의 특별회계 세입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특례 	안 제5조3항1호 안 제12조
행정안전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시지원 종합계획수립의 중복 ◦ 지방교부세 교부 특례 	안 제8조 안 제23조
교육과학기술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안 제14조
국토해양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례 ◦ 일반국도 관리청의 특례 ◦ 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특례 	안 제13조 내지 제15 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산 립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존 국유림의 사용 허가 및 대부 	안 제18조

○ 주요추진 계획

- 동두천의 어려운 실정과 특별법의 필요성을 방문 설명
- 국가지원 요구 시민 서명부 및 영상 DVD 전달
- 필요시 해당 부처 청사앞 집회 실시(시민단체와 협의 추진)

◆ 기획재정부 현황(www.mosf.go.kr)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예산총괄심의관	심의관	류성걸	2105-7100	◦ 특별회계설치 ◦ 국비지원
예산총괄과	과장	박춘섭	2150-7110	
	서기관	박창환	2150-7111	
행정예산과	과장	김윤경	2150-7510	◦ 특별회계설치 ◦ 국비지원
	서기관	김구년	2150-7511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장재형	2150-4130	◦ 조세특례
	사무관	이경용	2150-4132	
	사무관	이인기	2150-4131	
국유재산과	과장	정병기	2150-5150	◦ 국유재산
	서기관	이광기	2150-5151	
	사무관	임재정	2150-5153	

◆ 국방부 현황(www.mnd.go.kr)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국유재산과			748-5835	특별회계조성
군사시설재배치과			748-5845	군사시설협의

◆ 행정안전부(www.mopas.go.kr)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지역발전과	과장	홍기남	2100-3841	종합계획수립
	서기관	민병대	2100-3854	
	사무관	박현석	2100-3855	
지방교부세과	과장	박재민	2100-4132	교부세 지원
		강병일	2100-4137	
		강성익	2100-4133	

◆ 교육과학기술부 현황(www.mest.go.kr)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인력수급통계과	과장	김성규	2100-6358	
		신은희	2100-6352	

◆ 국토해양부 현황(www.mltm.go.kr)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수도권정책과	과장	김규현	2110-8155	
		조인환	2110-8159	
		이유리	2110-6175	

◆ 산림청 현황(www.forest.go.kr)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비고
국유림관리과	과장	박학순	042-481-4090	
		전병철	042-481-4097	
		진현무	042-481-4098	

2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설득

- 추진시기 : '09.1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 전까지
- 행정안전위 통과를 위한 제1순위 대응 대책
- 특별법 검토 단계에서 동두천의 실상과 특별법 필요성 설명
- 제안설명시 전문위원의 긍정적 검토보고서 작성 요청

◆ 입법조사관 현황(소회의실 446호)

직위	직급	성명	전화번호	호실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장인식	788-2716	443
전문위원	이사관	백환기	788-2825	439
입법조사관	서기관	홍형선	788-2196	442
“	“	배종학	788-2185	441
“	“	조문상	788-2697	442

3 상임위별 국회의원 설득 및 지속 관리

① 행정안전위 국회의원 협조요청('09.1월~행안위 통과시까지)

- 제안설명시 긍정적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법안심사소위 및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위한 협조 요청
- 행안위 : 23명(한나라당 14, 민주당 7, 선진과창조의모임 1, 무소속 1)
- 법안심사소위 : 9명(한나라당 5, 민주당 3, 선진과창조의모임 1)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별 현황 : 별첨 <참고자료 1>

○ 주요추진 계획

- 특별법 국회 통과시까지 지속적인 관리
- 감사 서한문 및 협조요청 서한문 정기적 발송

※ 감사서한문(서명 의원 208명), 협조요청 서한문(미서명 의원 91명)

- 국회의원 홈페이지 글올리기 및 e-mail 보내기(단체, 시민)

- 시민건의서 및 시 홍보(역사, 애환)영상 DVD 전달

◆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별 국회의원 현황

정당별	국회의원(23명)
한나라당(14)	조진형(위원장), 권경석(간사), 김성조, 김소남, 김태원, 신지호, 안경률, 원유철, 유정현, 이범래, 이은재, 이인기, 장제원, 정갑윤
민 주 당(7)	강기정(간사), 김유정, 김충조, 김희철, 이용삼, 최규식, 최인기
선진과창조의모임(1)	이명수(자유선진당)
비교섭단체(1)	이윤석(무소속)

※ 1) 밑줄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9명, 위원장 권경석(한나라당)

2) 청색은 특별법 동의 서명 의원(16), 미서명(7명)

②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설득('09.1월~4월)

○ 특별법에 대한 의견 조회시 반대가 예상되는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주요추진 계획

- 특별법 국회 통과시까지 지속적인 관리

- 감사 서한문 및 협조요청 서한문 정기적 발송

※ 감사서한문(서명 의원 208명), 협조요청 서한문(미서명 의원 91명)

- 국회의원 홈페이지 글올리기 및 e-mail 보내기(단체, 시민)

- 시민 서명부 및 시 홍보(역사, 애환)영상 DVD 전달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현황

정당별	국회의원(26명)
한나라당(15)	서병수(위원장), 최경환(간사), 강길부, 김광림, 김성식, 김재경, 나성린, 박종근, 배영식, 안효대, 이종구, 이혜훈, 정양석, 진수희, 차명진
민 주 당(8)	이광재(간사), 강봉균, 강성종, 김종률, 김효석, 박병석, 백재현, 오제세
선진과창조의모임(1)	임영호(간사)
비교섭단체(2)	양정례(친박연대), 강운태(무소속)

※ 청색은 특별법 동의 서명 의원(18명), 미서명(8명)

◆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현황

정당별	국회의원(18명)
한나라당(11)	김학송(위원장), 유승민(간사), 김무성, 김동성, 김성희, 김영우, 김옥이, 김장수, 김효재, 임태희, 홍준표
민 주 당(4)	안규백(간사), 문희상, 서종표, 정국교
선진과창조의모임(2)	이진삼(간사), 심대평
친박연대(1)	서청원

※ 청색은 특별법 동의 서명 의원(11명), 미서명(7명)

◆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현황

정당별	국회의원(29명)
한나라당(17)	이병석(위원장), 허 천(간사), 김성태, 김정권, 박상은, 박순자, 백성운, 송광호, 신영수, 유정복, 윤 영, 윤두환, 이해봉, 장광근, 전여옥, 정희수, 현기환
민 주 당(8)	박기춘(간사), 강창일, 김성곤, 김성순, 김세웅, 이시종, 이용섭, 조정식
선진과창조의모임(2)	김낙성(간사), 이재선
비교섭단체(2)	이인제(무소속), 최욱철(무소속)

※ 청색은 특별법 동의 서명 의원(20명), 미서명(9명)

4 특별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국민 홍보대책

① 공중파 방송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추진시기 : '09년 상반기 중
- 대상매체 : KBS-TV, MBC-TV, SBS-TV
- 주요내용
 - 동두천의 어려운 실상과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
 - 방송시청률이 높은 시간대(19:00~21:00) 방영 추진
 - 시사 프로그램 방송 타진
- 소요예산액 : 100백만원('0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② 주요일간지 보도

- 추진시기 : '09. 1월~ 법 제정시까지
- 대상매체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

- 주요내용
 - 동두천에 대한 기획보도 자료 제공
 - 시장, 시의장, 사회단체 등 기자회견 추진

5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구성시기 : '09. 1월
- 구성내용 : 시의회, 관내 각급 사회단체 등
- 활동내용
 -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의 실상 홍보
 -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특별법의 조기 제정 촉구
- 주요 지원사항
 -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6 행정 조치사항

- 특별법 추진상황 상시 파악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동향
 - 특별법 의견조회 및 회신 상황
 - 국회 일정(행정안전위원회)
-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대응 대책 철저
 - 국회 및 경기도(제2청)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수 23명 : 한나라당 14, 민주당 7, 선진과창조의모임 1, 무소속1)

구분	성명	소속	전화번호	호실	비고
	위원장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 부평구갑)	788-2301	525	
	간사 권경석	한나라당 (경남 창원갑)	788-2349	828	법안심사소 위원장 (서명)
	간사 강기정	민주당 (광주 북구갑)	788-2666	738	법안심사소 위원 (서명)
	간사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788-2891	305	법안심사소 위원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788-2928	826	(서명)
	김소남	한나라당 (비례대표)	788-2174	234	(서명)
	김태원	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을)	788-2455	413	(서명)
	신지호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	788-2707	414	법안심사소 위원 (서명)
	안경률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788-2026	320	

구분	성명	소속	전화번호	호실	비고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시갑)	788-2949	616	(서명)
	유정현	한나라당 (서울 중랑구갑)	788-2748	845	(서명)

구분	성명	소속	전화번호	호실	비고
	이범래	한나라당 (서울 구로구갑)	788-225 4	813	법안심 사소위 원 (서명)
	이은재	한나라당 (비례대표)	788-283 1	203	법안심 사소위 원 (서명)
	이인기	한나라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788-203 2	205	(서명)
	장제원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788-267 3	844	법안심 사소위 원 (서명)
	정갑윤	한나라당 (울산 중구)	788-220 6	609	(서명)
	김유정	민주당 (비례대표)	788-294 4	207	

구분	성명	소속	전화번호	호 실	비고
					
	김충조	민주당 (비례대표)	788-211 1	723	(서명)
	김희철	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788-248 3	704	
	이용삼	민주당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군)	788-252 1	527	
	최규식	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788-274 3	416	법안심 사소위 원
	최인기	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788-292 7	530	법안심 사소위 원
	이윤석	무소속 (전남 무안군·신안군)	788-291 1	115	(서명)